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 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32”를 “229”로 하고, “별정직 계 1” 및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을 각각 삭제하며, 일반직 계 “229”를 “22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05”를 “20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2</u>	<u>229</u>	-3
•	•	•	
•	•	•	
<u>별정직 계</u>	<u>1</u>	<u><삭 제></u>	-1
<u>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u>	<u>1</u>	<u><삭 제></u>	-1
<u>이하</u>			
일반직 계	<u>229</u>	<u>227</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05</u>	<u>203</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8